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의 안 번 호 제2023-004-026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 결 연 월 일 2023. 3. 8.

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6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# 이 유

##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("이하 "보호법"이라 한다.)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,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 성명	주소	종업원 수 (명)

#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에 대한 개인 정보 관리실태 현장조사('22.11.28.~11.29.)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.

## 2. 행위 사실

# 가. 개인정보 수집·이용

피심인은 0000 국민체육센터 회원 관리를 위해 '22. 11. 28.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하고 있다.

#### 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구분	수집·이용 항목	수집일	건수(명)
회원명단 (0000 회원관리시스템)	(필수) 성명, 생년월일, 집주소, 성별, 휴대폰 번호 (선택) 아이디, 비밀번호	'06.6월~계속	46,338

#### 나. 개인정보의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

#### 1)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'0000 회원관리시스템'에서 퇴직 직원 및 전보 직원의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피심인은 같은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조회·수정·출력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. 1. 26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2023. 2. 9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 Ⅲ. 위법성 판단

# 1.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## 가. 관련 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 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'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4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「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2호, 이하 '고시'라고한다.) 제5조제2항은 '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8조제1항은 '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다.

# 나. 위법성 판단

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나, 퇴직·전보한 직원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변경·말소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, 고시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.
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하나,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,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「과태료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 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.

# < 과태료 부과기준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[별표 2] >

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		
위반행위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자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6호	600	1,200	2,400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「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개인정보위 2021. 1. 27.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 제8조(과태료의 가중)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서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%인 60만 원을 가중한다.

<	과태류의	가중기	기준(제8조	과려)	>
_	피네포의	1101	ᅵᆫ(게)	근단	

기준	감경사유	감경비율
위반의	2.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	기준금액의
정도	하는 경우	30% 이내

## 다.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(과태료의 감경)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,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 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%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.

#### < 과태료의 감경기준(제7조 관련) >

기준	감경사유	감경비율
조사	1.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	기준금액의
협조·	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	50% 이내
자진	2.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	기준금액의
시정 등	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	40% 이내

##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· 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<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	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		
위반조항	처분 조항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(D) D=(A+B+C)
제29조(안전성확보 조치 의무 위반)	법 제75조제2항제6호	600	▽60	△300	360

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 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